

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 북 구
(도시안전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56

제출년월일 : 2023년 9월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성북구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2조)
- 다. 협력체계 구성 등(안 제3조)
- 라.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안 제4조)
- 마.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안 제5조)
- 바. 성북구 안전보건지킴이(안 제6조)
- 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기간

- 예고기간 : 2023. 7. 6. ~ 2023. 7. 26. (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3)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결과

- 인권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
- 아동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실태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
2.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3.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성북구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성북구 안전보건지킴이)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북구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성북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그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성북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성북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비용 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4. 작성자

안전생활국 도시안전과장 이 인 복